

濟州島 家族의 姑婦關係에 대한 研究

金 惠 淑

〈 目 次 〉

I. 序 論	IV. 研究結果 分析
II. 先行研究의 檢討	1. 分家狀態
III. 研究方法	2. 相互生活 關係
1. 調查對象	3. 葛藤의 程度 및 原因
2. 調查對象者의 一般的 性格	4. 姑婦間의 態度
3. 測定道具 및 資料處理	V. 結 論

I. 序 論

濟州島는 그 特有한 自然環境의 영향하에서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모든 生活樣式이 本土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形成되어 왔다. 어려운 生活 與件 속에서 勤勉하지 않으면 生存에 威脅을 받았던 先人들은 老少를 가리지 않는 強靱한 生活 態度로 그들 나름 대로의 삶의 樣式을 創出해 왔다. 그리하여 陸地와는 달리 固有한 文化·慣習·制度 및 家屋構造를 이루었으며 이러한 것들은 또한 독특한 家族構造를 生成시켰다.

특히 濟州島(以下 本島라 함) 女性의 勤勉性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로서 “제주도 女性의 勞動經濟的 能力은 타지방에서도 본받아야 할 家庭管理者로서의 훌륭한 資質중의 하나”¹⁾라 評價되고 있다. 그런데, 陸地 傳統家族과 여러 側面에서 差異點을 發見할 수 있는 特徵들 중에서 姑婦關係에 대한 本格的인 研究는 찾아보기 힘들다. 韓國家族의 姑婦間은 傳統社會에서나 現代社會에서 모두 否定的인 관계로 받아들여 지고 있는 것은 周知의 事實이나, 本土와 상이한 점을 많이 內包하는 本島 家族에서의 姑婦關係는 어떠한 樣相을 띠고 있는지의 問題이다.

1) 黃德旬, “濟州道の 家計管理 實態에 關한 調查研究”, 「대한가정학회지」19-2, 1981 p. 56.

父子間에 솔을 갈라 따로 生活하는 경우가 많아 한 울타리내의 안·밖거리에서도 媪母가 마당에서 作業하는 것을 目擊하면서 며느리는 자신의 일을 하기 위해 그냥 지나쳐 간다. 또한 같은 동네에 떨어져 살 때에 媪母가 子息집에 와도 안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마당에서 서너 마디 對話를 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普遍的인 狀況이고 보면 本島의 姑婦關係에 대한 問題는 家族研究者들의 관심 밖에 놓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미 核家族化 되어 있다는 서구에서도 이들의 關係는 葛藤의 樣相을 드러내고 있다. Bell²⁾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역할들은 그들 관계에 있어서 빈번한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그들이 비록 서로 다른 많은 역할 경험을 가진 두 개인일지라도 그들의 성인 역할이 본질적으로 서로 같다는 점이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姑婦間的 葛藤은 반드시 同居家族의 경우에만 심각한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다. 本島의 수많은 勞動謠 중에 시집살이의 애환을 노래한 것이 상당수 있는 점도³⁾ 이러한 葛藤의 구체적 실상의 하나라 생각된다. 여기에 바로 研究의 必要性이 있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地理·歷史的 側面, 生活慣習的 側面, 親族組織의 側面 등 多角的인 方向에서 接近, 分析하는 과정에서 本島 家族의 特性에 대한 보다 올바른 理解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本考에서는 本島 家族의 姑婦關係를 分家狀態를 中心으로 葛藤의 存在與否, 程度 및 原因 나아가서는 전반적인 相互 生活 關係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陸地傳統 家族의 姑婦關係와의 比較·檢討에도 그 目的을 두고 있다.

筆者는 本島 家庭의 夫婦間 意思決定에 관한 研究過程에서 本島 女性의 意識構造가 陸地部에 비해 상당히 다른 面貌를 지니고 있음에 注目하게 되었고, 家族 研究에 앞서 女性 研究가 先行되어야 함을 提言한 바 있다.⁴⁾ 本考는 이러한 女性 研究와도 일련의 聯關性을 갖는다.

II. 先行研究의 檢討

姑婦關係에 대한 研究는 家政學 뿐만 아니라 社會學·人類學 등 諸分野에서 論議되어지고 있다. 接近方法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크게는 民謠·雜誌·記事文·手記 및 古典文學 등을 토대로 한 研究와 媪母와 子婦를 각각 또는, 同時 對象으로 하여 設問調查를 통해 分析한 經驗研究가 主를 이루고 있다.

2) Robert R. Bell, Marriage and Family Interaction, The Dorsey Press, 4ed, 1975, p. 317.

3) 金榮敦, 「濟州島 民謠研究上」, 一潮閣, 1965, pp.101 ~ 131, 參照.

4) 金惠淑, “濟州市 家庭의 夫婦間 意思決定에 관한 研究”,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창간호, 1983, p.24.

社會學 分野에서는, 직접 媳母와 子婦를 對象으로 하여 姑婦關係를 把握한 研究라기 보다는 分家한 子女와 父母와의 關係(李効再, 1971), 家族의 役割構造 및 長男家族과의 關係(崔在錫, 1969; 1979; 1982) 등에서 部分的으로 姑婦關係를 示唆해 주고 있다.

人類學에서는 口碑文學, 月刊誌, 法院, 精神病院 등에서 資料를 수집하여 直觀的 分析을 통해 전반적인 姑婦關係를 다룬 研究(李光奎, 1975; 1981) 및 實態調查를 行한 研究(朴富珍, 1975; 1981) 등이 있다.

家政學에서는 未婚女性의 媳母觀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媳母나 子婦 또는 兩側을 對象으로 하여 葛藤要因, 葛藤의 表出行動, 調停, 他家族 關係에 미치는 影響, 同居問題 및 役割遂行 등을 分析(李泰賢, 1968; 林貞子, 1970; 李貞珩, 1973-3; 1973-7; 1974, 高貞子, 1974; 李琦淑, 1975; 1977, 柳嘉孝, 1976; 金敬姬, 1977; 李敬愛, 1980; 李順炯, 1983)하고 있다.

이 이외에도 實態調查와 함께 國文學 및 歷史上으로 나타난 姑婦問題를 다룬 것(金容旭·李琦淑, 1977)과 姑婦 兩側을 同時 對象으로 不和要因 및 解消方案을 實態調查한 研究(黃春仙, 1979) 등도 있다.

本島를 對象으로 하여 姑婦關係를 직접 다룬 研究는 찾아볼 수 없으나, 親族을 광범위 하게 살핀 연구(泉靖一, 1966; 玄容駿, 1970; 1973, 佐藤信行, 1973; 李光奎, 1974; 秦聖麒, 1977; 崔在錫, 1979)와 老人을 對象으로 한 研究(韓昌榮, 1978; 金兌玄, 1980) 등에서 姑婦關係에 대한 理解를 얻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先行研究들은 그 題目 자체가 示唆해 주는 바와같이 姑婦間의 葛藤이나 不和要因 등 상당히 부정적인 측면 즉, 葛藤을 전제로 한 연구라는 共通點을 發見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까지나 姑婦問題의 심각성을 當爲로서만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다. 보다 肯定的인 시각으로 誘導하며, 葛藤의 解決方案에 對한 研究도 必要하다고 본다.

이러한 시점에서 本島 家族의 姑婦關係에 대한 研究는 痼疾的인 韓國의 姑婦問題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실마리의 한 끝을 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 金兌玄은 本島에 있어서 “家族間의 關係는 유교의 傳統的 慣習이 무시된 채 사랑과 이해를 바탕으로 많은 融通性을 지니도록 構造化”⁵⁾되어 있다고 하여 姑婦間의 關係도 육지의 傳統 家族처럼 부정적이지만은 않음을 暗示해 주고 있다. 따라서, 本考에서는 本島 家族의 特性에 비추어 他研究에서 論議되었던 不滿의 表出行動, 葛藤의 調停 및 他家族關係에 미치는 영향 등은 제외하였다.

5) 金兌玄, “濟州島의 老人生活 研究”, 「대한가정학회지」18-1, 1980, p.99.

Ⅲ. 研究 方法

1. 調査對象

調査對象은 媼母와 子婦間的 關係를 同一時點에서 파악코자 하는 研究의 根本 趣旨에 따라 媼母·子婦 兩側으로 하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本人이 子婦이자 또한 며느리를 두고 있는 媼母일 수도 있었는데, 이런 때는 媼母의 立場에서 子婦와의 關係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媼母의 경우 며느리가 여럿일 때는 가까이 살면서 자주 만나게 되는 며느리와의 關係를, 며느리가 모두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는 큰 자부와의 關係를 應答케 했다. 이렇게 하여 媼母 200명, 子婦 275명, 總 475명이 調査對象者가 되었다.

調査는 地域의 偏重을 排除하기 위하여 거의 本島 全域에 걸쳐 實施하였으며 구체적 표집지역은 다음과 같다.

제 주 시 : 1도1동, 2도1·2동, 3도1동, 용담1·2동

서귀포시 : 서귀동, 서흥동, 월평동, 동흥동, 중문동

남제주군 : 남원읍 남원리, 하례리, 신예리, 위미리

북제주군 : 애월읍 상가리·하가리, 한림읍 한림리, 구좌읍 한동리, 한경면 조수리·신창리

2. 調査對象者의 一般的 性格

本 調査對象者의 一般的 性格은 <표1>과 같다.

연령별로는 子婦의 경우 30代(31.3%)와 40代(32.0%)가 主를 이루고 있으며 媼母는 60代(37.5%)가 많다.

教育程度는 子婦의 경우 國卒(34.6%)이 가장 많고 中卒·高卒이 거의 비슷한 分布를 나타내고 있다. 大卒은 6.2%에 불과하며, 無學도 13.8%가 되고 있다. 媼母는 無學(74.0%)이 단연 높으며, 國卒 23.0%, 中卒 3.0%에 불과하다. 兩側을 통틀어보면 學力이 높아질수록 그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 低學力에 偏重되어 있다.

노동참여 정도를 살펴보면 집안살림만 하고 있는 경우가 자부(31.3%)나 시모(31.5%)가 거의 비슷하며, 양쪽 모두 농사일에의 참여가 가장 많다.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는 자부(8.4%)가 시모(1.5%)보다 다소 높긴 하나 모두 그 비율이 아주 낮은 편이다.

〈表 1〉 調查對象者의 一般의 性格

일 반 사 항		자 부		시 모		계	
		No	%	No	%	No	%
연 령	30 세 미 만	64	23.3			64	13.5
	30 - 39	86	31.3			86	18.1
	40 - 49	88	32.0	17	8.5	105	22.1
	50 - 59	37	13.4	58	29.0	95	20.0
	60 - 69			75	37.5	75	15.8
	70 세 이 상			50	25.0	50	10.5
교 육 경 도	부 학	38	13.8	148	74.0	186	39.1
	국 졸	95	34.6	46	23.0	141	29.7
	중 졸	62	22.5	6	3.0	68	14.3
	고 졸	63	22.9			63	13.3
	대 졸	17	6.2			17	3.6
노 동 참 여	집안살림만	86	31.3	63	31.5	149	31.4
	직장생활	23	8.4	3	1.5	26	5.5
	장사	35	12.7	17	8.5	52	10.9
	농사	113	41.1	99	49.5	212	44.6
	잡수타	18	6.5	13	6.5	31	6.5
결 혼 경 험	초혼	262	95.3	178	89.0	440	92.6
	재혼	13	4.7	22	11.0	35	7.4
남편의형제순위	장남	135	49.1	81	40.5	216	45.5
	외아들	33	12.0	39	19.5	72	15.1
	차남이하	107	38.9	80	40.0	187	39.4
결 혼 기 간	10 년 미 만	112	40.7	1	0.5	113	23.8
	10 - 19	68	24.7	4	2.0	72	15.2
	20 - 29	75	27.3	42	21.0	117	24.6
	30 년 이 상	20	7.3	153	76.5	173	36.4
동 거 가 족	1 인			56	28.0	56	11.8
	2 - 4	124	45.1	73	36.5	197	41.5
	5 - 7	132	48.0	61	30.5	193	40.6
	8 인 이 상	19	6.9	10	5.0	29	6.1
계		275	100.0	200	100.0	475	100.0

結婚經驗에 있어서 再婚은 자부(4.7%)보다는 시모측(11.0%)이 높았는데, 이는 再婚率이 낮아지고 있는 現象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 보다는 연령의 差異에서 起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즉, 현재의 子婦들이 媼母의 연령층이 되어가는 사이에 離婚 및 再婚의 可能性이 증가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結婚期間은 子婦의 경우 10年 미만(40.7%)이 많으며, 媼母는 30年 이상(76.5%)이 가장 많다. 媼母에 있어 결혼기간이 10年 미만(0.5%), 10-19年(2.0%)이 소수나마 있는 것은 再婚 家庭으로 풀이된다.

同居家族員數를 보면 子婦는 5-7인(48.0%)이 많아 家族週期에 있어 擴大期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고, 媼母는 2-4인(36.5%)이 많아 反對로 縮小期에 접어든 것이라 볼 수 있다. 媼母의 경우 1人家族 즉, 媼母 혼자 生活하여 家口를 이룬 경우도 28.0%나 되어 本島 老人, 나아가 女性의 강한 自立精神의 一面을 읽을 수 있다.

3. 測定道具 및 資料處理

先行研究들을 바탕으로 本島의 실정에 알맞도록 質問紙를 作成하여 測定道具로 삼았다.

本研究에 使用된 質問紙는 分家狀態를 알기 위한 6문항, 相互生活 關係에 대한 9문항, 葛藤의 程度 및 原因을 묻는 12문항, 姑婦間的 態度 5문항, 一般事項 7문항, 총 39문항으로 構成되었다.

調査는 1983年 3월 26일~5월 8일 사이에 실시했으며, 現地調査는 미리 준비한 질문지에 의해 직접 面接調査하였다.

資料의 통계처리는 빈도수를 내고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居住狀態에 따른 差異 檢證을 위해 $X^2(chisquare)$ 를 使用하였다.

IV. 研究結果 分析

1. 分家狀態

姑婦關係를 理解하는 데는 먼저 媼母와 子婦가 住居上으로는나 經濟上 어떠한 形態로 結合되고 있는가를 살펴야 될 것이다.

本島 家族의 特性을 念頭に 둘 때 居住狀況만을 가지고서는 同居家族인지 分家家族인지를 구별하는 데 難點이 있다. 따라서, 陸地 傳統家族의 觀點에서 分家狀態를 파악하기는 더욱 곤란하다.

本島의 家族은 直系親이 한 울타리 내에 居住하더라도 生産이나 消費 및 炊事를 分離하는 경우가 많다. 媳母와 子婦가 한 집안 또는 한 울타리 내에서 안거리와 밖거리의 다른 채에 居住하면서 炊事 등의 經濟單位를 分離하고 있다면 이를 同居家族으로 보아야 할 지, 아니면 分家로 區分할 것인지에 선뜻 판단이 서지 않는 것이다.

심지어는 한 울타리 내의 生活도 서로가 共同單位를 이루거나 아니면 완전히 독립된 經濟單位를 形成하지 않고, 經濟生活 중 일부는 共同으로 하고 일부는 分離하는 예도 있다. 自己의 生活은 自身의 힘으로 解決하려는 自立精神이 매우 濃厚하여 年老한 후에도 耕作은 子夫婦에게 의존하면서도 收穫이나 消費生活 및 炊事を 따로 행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家族처럼 보이면서도 父世代와 子世代의 所有가 각각 分明하게 되어 있어 실제로는 두 개의 家族을 形成하는 예가 흔하다.

崔在錫은 家族의 概念을 “家計를 共同으로 하는 親族集團”⁶⁾이라고 規定한 바 있다. 이는 本島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다만 “陸地와는 달리 濟州島의 家族에 있어서는 〈家計의 共同〉, 즉 經濟生活의 共同 가운데 炊事の 共同이 單位로서의 家族生活 확인의 가장 有效한 基準이 된다”⁷⁾고 하 바 있다.

本考에서는 이러한 概念規定을 바탕으로 分家狀態를 파악해 보고자 한 것이다. 本 調査對象 家族의 分家狀態는 〈표2-1〉에서 보여 주는 바와같이 한 집안에서 媳母와 子婦가 같이 生活하는 家族이 18.1%, 한 울타리내의 안거리와 밖 거리에 居住하는 家族이 13.9%, 다른 집에서 살고 있으나 同一部落內일 경우는 31.6%, 다른 部落에 멀리 떨어져 生活하고 있는 家族이 36.4%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姑婦가 한 지붕 아래에서 經濟를 전부 共同으로 하여, 直系家族의 形態를 取하는 경우는 61 家族(12.8%)에 불과하다. 또한 炊事を 共同으로 하면서 生産이나 消費生活에 있어서는 一部만 共同으로 하는 家族은 3가구(0.6%)였는데, 特記할 점은 소수이긴 하나 한 집안 내에서 생활하면서도 炊事を 分離하는 家族(19가족, 4.0%)도 있다. 이 중에는 生産·消費 共同이 3 家族, 일부공동 6 家族, 分離는 10 家族으로 나타났다. 長男家族만을 對象으로 한 研究에서도, 住居와 炊事を 같이하고 耕作과 消費生活까지 共同으로 하면서 하나의 家族生活을 영위하는 典型的인 直系家族의 形態는 단 1事例(20家族中)⁸⁾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 경우도 부모가 워낙 年老하고 勞動力이 상실되어 分家하면 獨立된 生活을 영위할 能力이 없기 때문에 함께 하나의 經濟單位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들은 儒敎의 原理에 支配를 받은 韓國의 傳統的인 家族意識이 강하게 作用되고 있는 곳과는 상당히 거리감 있는 現象으로 보인다.

6) 崔在錫, 「韓國家族 研究」, 民衆書館, 1966, p.19.

7) 崔在錫, 「濟州道の 親族組織」, 一志社, 1979, p.21.

8) 上揭書, p.28.

〈表 2-1〉 分家狀態

거주형태	경제형태	No.	%
한 집안에서 생활	생산·소비공동, 취사공동	61	12.8
	생산·소비일부공동, 취사공동	6	1.3
	생산·소비공동, 취사분리	3	0.6
	생산·소비일부공동, 취사분리	6	1.3
	생산·소비분리, 취사분리	10	2.1
	소 계	86	18.1
안·밖거리에 생활	생산·소비공동, 취사공동	17	3.6
	생산·소비일부공동, 취사공동	9	1.9
	생산·소비분리, 취사공동	2	0.4
	생산·소비공동, 취사분리	4	0.8
	생산·소비일부공동, 취사분리	15	3.2
	생산·소비분리, 취사분리	19	4.0
소 계	66	13.9	
동일부락내에 떨어짐	생산·소비공동, 취사분리	6	1.3
	생산·소비일부공동, 취사분리	21	4.4
	생산·소비분리, 취사분리	123	25.9
	소 계	150	31.6
타부락으로 멀리 떨어진 집	생산·소비공동, 취사분리	6	1.3
	생산·소비일부공동, 취사분리	13	2.7
	생산·소비분리, 취사분리	154	32.4
	소 계	173	36.4
계		475	100.0

한 울타리 내에서 각각 안거리와 밖거리에 따로 생활하고 있는 경우에도 經濟共同 與否는 여러 유형으로 나타났다. 生産·消費·炊事 모두 共同은 17 家族(3.6%)에 불과하다. 炊事は 共同이면서도 生産·消費는 일부만 공동인 경우가 9 家族(1.9%), 分離는 2 家族(0.4%)이다. 이와같이 한 울타리 내에 居住하면서도 生産·消費에 關係없이 볼 때 炊事共同은 28 家族(5.9%) 뿐이다. 한편, 炊事分離인 경우에도, 生産·消費를 共同으로 하는 4 家族(0.8%), 일부공동 15 家族(3.2%), 모두 분리는 19 家族(4.0%)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건물의 규모가 큰 안거리에 姑婦中 과연 누가 居處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흥미로운 점이 된다. 총 66 家族中 子婦가 37 家族이 生活하고 있어서, 子婦側이 더 많이 占有하고 있다. 이는 同居家族員數를 볼 때 媳母는 2~4인의 경우가 많은데 비해 子婦는 5~7인이 많아 家族員의 규모도 決定要因의 하나로 作用하고 있는 것 같다. 즉, 家族

週期別로 볼 때 縮小期에 놓여있는 媳母의 家庭이 안거리인 큰 채를 차지하는 것보다는 擴大期에 있는 子婦가 使用하는 것이 本島民의 合理的이고 實利的인 思考方式으로 볼 때는 지극히 당연한 結果로서 비록 媳母가 작은 채로 옮긴다 해도 權威上의 問題에 어떤 變化를 意味하는 것은 아니다. 順理에 따르는 自然現象의 하나로 理解되어야 할 것으로서, 밖거리로 옮긴다고 해서 媳母의 地位가 저하되는 것은 아니다. 움직일 수 있는 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살아 가려는 것은, 自身의 問題는 스스로 解決하여 子息에게 기대지 않으려는 意志로 보아진다. 또한, 일정한 거리를 둔다는 것은 서로의 生活空間을 인정하고 父母가 자식의 內的 生活에 統制나 간섭을 가하지 않게 되므로서 오히려 갈등이 적고 情緒的 紐帶가 강해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全國을 對象으로 한 高貞子⁹⁾의 研究에서는 長男과 同居하는 媳母가 48.92%로 가장 높은 率을 보여 우리나라 特有的 擴大家族 制度를 나타내고 있으며, 夫婦同居는 19.79%로서 本島와는 다른 特性을 드러내고 있다.

同一部落 內에서 떨어져 生活하고 있는 경우에는 炊事共同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이 때도 生産·消費를 완전히 共同으로 하는 경우가 6 家族(1.3%), 일부공동 21 家族(4.4%)이었고, 모두 분리는 123 家族(25.9%)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서로 다른 부락에 멀리 떨어져 生活하는 경우도 生産·消費共同 6 家族(1.3%), 일부공동 13 家族(2.7%), 완전분리 154 家族(32.4%)으로 나타났다.

同一部落이든 他部落이든 떨어져 生活하는 家族들은 炊事は 물론 生産이나 消費도 분리함이 일반적이거나 父母의 勞動力이 약하면 子夫婦가 經濟의 全部 또는 一部를 부담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경우도 媳母가 老齡일 때에 나타나는 것으로서, 조금이라도 氣力이 남아 있는 한 獨立하려 하며 끼니조차 마련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子婦에게 依存한다. 자식들이 父母를 모시고자 懇請하여도 움직일 수 있는 한은 끝내 依託치 않으려는 현상은 本島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결국 한 집 또는 안·밖거리에서 生活하는 경우는 152 家族(32.0%)이며, 서로 따로 떨어져 지내는 경우가 323 家族(68.0%)이 된다. 이 152 家族 中에서 炊事共同이 95 家族이며 나머지는 炊事 분리이다.

子婦의 立場에서 男便이 長男 또는 외아들인 경우가 次男以下 보다는 많으며, 媳母도 자식들이 모두 멀리 떨어져 生活할 때 큰 자부를 對象으로 應答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 차남 이하 보다는 장남(외아들 포함)의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共同炊事 즉, 直系家族은 全體의 약 20%로 나타나고 있다. 陸地의 家族이 現實의으로는 夫婦家族이 直系家族보다 통계적으로 더 많으나, 理想型에 있어서는 直系家族이라는 것은 周知의 사실이다. 또한, 서울의 長男家族의 경우 “分居

9) 高貞子, “韓國家庭의 姑婦關係에 관한 研究”, 東亞大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74, p.26.

한 長男의 家族은 現時點에서 말할 때 일시적으로 分居하는데 지나지 않고 分家라고는 말할 수 없다”¹⁰⁾는 점을 勘案해야 될 것이다. 또한 양 지역에 있어 직계가족 또는 夫婦家族의 比率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상관없이 現實的으로 보여주는 陸地의 直系家族이나 夫婦家族은 本島와 形態上으로는 비슷하더라도 그 構成上에 있어서는 큰 差異가 있음을 發見할 수 있다. 즉, 陸地의 경우는 父母의 勞動力이 상실되지 않더라도 直系家族을 形成하지만, 本島는 장남이라 할지라도 그 父母는 勞動力이 있는 한 獨立된 生活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다. 父母의 能力이 정신적·육체적으로 분리된 生活을 이룰 수가 없는 形편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直系家族의 形態를 취하는 이러한 現象은 陸地와는 달리 本島의 家族制度가 核家族 中心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다시 <표2-2> 및 <표2-3>에 나타난 同居家族과 分家家族의 상황을 分析해 보기로 하자.

<表 2-2> 同居家族의 狀況

동 거 형 태		No	%
동 거 시 기	결혼직후 계속	15	15.8
	결혼직후 분가하다 부모의 연로 이후	13	13.7
	결혼후 분가하다 부모의 노동력 상실 이후	67	70.5
동 거 이 유	부모연로 및 노동력 상실	70	73.7
	자식분가시킬 집 마련을 못해서	4	4.2
	며느리의 시집생활 익숙을 위해	6	6.3
	자식으로서의 도덕관념	15	15.8
	계	95	100.0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本島의 分家狀態를 ‘家計를 共同으로 하는 親族集團’이라는 概念 規定의 前提하에 ‘共同炊事’를 單位로서 본다면 姑婦 同居家族은 95 가구로 나타났다.

同居時期別로는 結婚直後 계속 同居가 15 家族(15.8%), 結婚後 分家하다 父母의 勞動力은 다소 있어도 年老해진 후 同居한 경우가 13 家族(13.7%), 結婚後 分家하다 父母의 勞動力이 거의 상실된 이후 同居가 67 家族(70.5%)이다.

同居理由를 살펴보면 父母의 年老 또는 勞動力 상실 70 家族(73.7%), 자식을 分家시킬 집 마련을 못해서 4 家族(4.2%), 子婦의 시집생활 익숙을 위해서 6 家族(6.3%), 자식으로서의 도덕관념 15 家族(15.8%)이다.

10) 崔在錫, 「現代家族研究」, 一志社, 1982, p.213.

同居時期나 그 理由를 볼 때 父母의 勞動力 상실을 주로 들고 있어 直系家族이라 할지라도 本島 特有的의 內在하는 精神이 다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表 2-3〉 分家家族의 狀況

분 가 형 태		№	%
분 가 시 기	결혼직후 또는 결혼후 돌아온 첫 신구간	262	68.9
	결혼후 2 - 5 년	84	22.1
	결혼후 6 - 10 년	16	4.2
	결혼후 11 년 이 상	18	4.8
분 가 이 유	직업 관계	137	36.0
	서로의 독립생활 존중	201	52.9
	고부간 불화	25	6.6
	주택 협소	17	4.5
분가시 주택	부모가 이주해 나감	76	20.0
	자식이 이주해 나감	285	75.0
	기 타	19	5.0
계		380	100.0

炊事を 분리하고 있는 380 家族의 솔가른¹¹⁾ 時期를 보면 結婚直後 또는 結婚直後 돌아온 첫 新舊間¹²⁾ 부터 分家한 경우가 가장 많아 262 家族(68.9%)이나 되고 있다. 結婚後 2~5年 사이의 分家は 84 家族(22.1%), 6~10年後는 16 家族(4.2%)이며, 11年 이상이 지나서야 分家한 경우도 18 家族(4.8%)이 보인다. 韓國農村을 對象으로 조사한 한 연구¹³⁾에서는 結婚直後 分家한 家族보다 얼마간 媳父母와 同居하다가 分家한 경우가 훨씬 많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어, 本島의 分家時期가 韓國農村의 전반적인 그것보다 빠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分家가 이미 보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뚜렷한 이유없이 分家를 지연시키고 오랫동안 同居하게 되면 이러한 父母의 처사에 대해서 주위 사람들이 옹지 못한 일이라고 비난을 하기 쉬우며 불화가 발생해도 며느리에게 상당히 동정적인 태도”¹⁴⁾ 까지 보여준다.

分家の 理由로서는 서로의 독립생활 존중이 가장 많아 201 家族(52.9%)이 되고 있다. 직업

11) 本島에서는 살림을 따로 낼 때, ‘솔가른다’는 表現을 쓴다. 그러므로 한 집 또는 한 울타리 내에 居住하더라도 炊事の 共同與否로써 分家狀態를 유별하더라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12) 大寒後 5日~立春前 3日. 이 期間에 移徙하는 풍속이 있어 新舊間이 지난후 結婚을 하면 傳賃집 등을 얻기가 힘이 든다. 따라서 結婚直後 돌아온 첫 新舊間부터 分家한 것은 結婚直後 分家한 것과 同一하게 보아도 될 것이다.
 13) 朴富珍, “韓國農村 家族의 姑婦關係”, 「韓國文化人類學」13, 1981, pp.97-98.
 14) 崔在錫, 前掲書, 1979, p.32.

관계는 137 家族(36.0%), 고부간 불화(6.6%)나 주택협소(4.5%)는 소수이다. 이는 서울의 現代家族과 比較해 볼 때 그 樣相이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으로서, 서울의 경우 相互 자유롭게 독립된 生活을 위해 父母와 長男 서로가 원해서 分居한 것은 20%¹⁵⁾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本島가 서울의 現代家族 보다도 더욱 核家族의인 性格이 농후하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勞動力이 있는 한 獨立生活이 서로의 마음이 편하다는 島民들의 사고방식이 反映된 것으로 보인다.

分家當時의 상황을 보면 자식이 傳貰낸 집 또는 새 집을 마련하여 分家한 경우가 285 家族(75.0%)으로서 大部分을 차지하고 있다. 現在 居住하고 있는 집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父母가 移徙해 나간 경우는 76 家族(20.0%)이다. 그러나 東部 S部落에서는 오히려 父母自身이 家屋을 新築하거나, 買入해서 未婚子女를 이끌고 移徙해 가는 方式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다¹⁶⁾고 調査된 바 있다. 이러한 差異는 서로 調査對象 地域이 다르다는 點과, 本考는 형제순위에 關係없이 研究對象에 포함시켰으나 東部 S부락에서는 長男家族만을 對象으로 한 점 등에서 드러난 結果라 생각된다.

2. 相互生活 關係

姑婦間的 生活關係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家事運營權, 役割關係, 愛情關係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居住狀態에 따라서 差異를 檢證한 結果 $P < .01$ 이상에서 意味있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1) 家事運營權

家事運營權으로서 는 생활비 관리, 고광(庫房) 관리, 大事時 음식장만에 대한 주도권의 立場에서 접근하였다. 가사운영시의 책임이나 주도권의 向方은 姑婦間的 關係 파악에 주요한 要素의 하나라 생각된다. 육지 전통가족의 경우 안방을 누가 使用하느냐 하는 문제도 큰 변수로 作用하겠지만, 本島는 夫婦家族을 理想으로 하는 까닭에 제외되었다. 分家를 원칙으로 하는 곳에서 ‘안방물림’이란 큰 意味가 없기 때문이다.

<표3-1>에서 보여주는 바와같이 생활비나 고광관리는 媣母와 子婦가 각자 따로 管理하고 있는 경우가 단연 높다.

子婦管理가 媣母보다는 높지만 管理權이 子婦에게 더 많이 기울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수치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은 居住狀態에 따라 양상이 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調査對象 家族이 共同炊事 20%, 炊事分離 80%라는 점과, 또한 生産·消

15) 崔在錫, 前掲書, 1982, p.212.

16) 崔在錫, 前掲書, 1979, p.31.

〈表 3-1〉 家事運營權

거주형태		한 집	안·밖거리	동일부락	타부락	계	비 고
운영권 생활비	각자	20[23.2] (4.2)	44[66.7] (9.3)	147[98.0] (30.9)	170[98.3] (35.8)	381 (80.2)	$x^2=255.62$ df = 9 $p < .001$
	시모	9[10.5] (1.9)	1[1.5] (0.2)	1[0.7] (0.2)	1[0.6] (0.2)	12 (2.5)	
	자부	49[57.0] (10.3)	16[24.2] (3.4)	2[1.3] (0.4)	—	67 (14.1)	
	공동	8[9.3] (1.7)	5[7.6] (1.1)	—	2[1.1] (0.4)	15 (3.2)	
고 광	각자	15[17.4] (3.2)	39[59.1] (8.2)	145[96.6] (30.5)	169[97.7] (35.6)	368 (77.5)	$x^2 = 264.89$ df = 9 $p < .001$
	시모	10[11.6] (2.1)	2[3.0] (0.4)	1[0.7] (0.2)	1[0.6] (0.2)	14 (2.9)	
	자부	41[47.7] (8.6)	18[27.3] (3.8)	3[2.0] (0.7)	1[0.6] (0.2)	63 (13.3)	
	공동	20[23.3] (4.2)	7[10.6] (1.5)	1[0.7] (0.2)	2[1.1] (0.4)	30 (6.3)	
대 사시 음식장만	각자	1[1.2] (0.2)	4[6.1] (0.8)	23[15.3] (4.9)	42[24.3] (8.8)	70 (14.7)	$x^2 = 44.27$ df = 9 $p < .001$
	시모	22[25.6] (4.6)	17[25.7] (3.6)	30[20.0] (6.3)	57[33.0] (12.0)	126 (26.5)	
	자부	35[40.7] (7.4)	20[30.3] (4.2)	48[32.0] (10.1)	35[20.2] (7.4)	138 (29.1)	
	공동	28[32.5] (5.9)	25[37.9] (5.3)	49[32.7] (10.3)	39[22.5] (8.2)	141 (29.7)	
계		86[100.0] (18.1)	66[100.0] (13.9)	150[100.0] (31.6)	173[100.0] (36.4)	475 (100.0)	

費共同 20.4%, 일부공동 14.7%, 分離 64.9%라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생활비나 고평관리권의 推移가 비슷함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經濟權과 直結되는 문제로서 生活費에 대한 관리권이 있으면 자연히 고평관리권도 隨伴하게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한 집안에서 生活하고 있을 때도 이 권한은 媳母보다 子婦에게 높다. 本島 家族이 父母의 年老 내지는 勞動力이 상실되어서야 비로소 자식과 同居하는 양상을 考慮한다면 이러한 현상은 子婦의 管理權이 向上되었다기 보다는 媳母 自身の 管理能力 상실에 따른 결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한 집안에서 居住하면서도 각자에게 管理權이 있는 경우까지 있는데 이러한 것은 육지 전통가족과는 크게 다른 점이라 생각된다.

한 울타리 내의 안·밖거리에 居住하는 경우도 물론 媳母보다는 子婦가 높으나 한 집안에서 생활하는 경우와 다른 점은 姑婦 각자에게 管理權이 따로 있는 家族이 훨씬 많다는 점이다.

同一部落·他部落에 떨어져 있을 때도 管理權의 소재가 대부분 각자에게 있는데 이는 생활 자체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당연한 結果이다.

大時時 음식장만에 대한 주도권에 있어서는 다소 다른 形態를 띠고 있는데 한 집안에서 生活할 때 子婦의 주도권이 강한 反面, 각자 따로 하는 경우는 1 사례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媳母의 年老에서 오는 現象인 것 같다.

안·밖거리에서 生活하는 경우도 共同形態가 우세하다. 同一部落 內에서 떨어져 있는 家族은

共同 내지는 子婦의 주도권이 비슷한 비율로 分布되어 있다. 그러나 他部落 居住의 경우는 오히려 媼母의 주도권이 가장 높다. 이러한 居住形態는 젊은 子夫婦가 직업관계 등으로 인해 제주시 등 고향 밖으로 떠나 生活하게 되는데, 보통 大事는 고향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외지에 나가 있는 子婦보다는 媼母가 주도권을 행사하게 마련일 것이다. 따라서 大事時 음식장만에 대한 주도권의 向方은 居住形態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보인다.

2) 役割遂行關係

分家가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姑婦間에 누가 무슨 일을 맡아서 遂行하고 있는가의 측면보다는 서로간에 어느 정도의 協助關係에 놓여 있는가를 살피는 立場을 취했다. 役割遂行에 있어서는 농사 및 집안 일, 김장 및 장담그기, 농약 및 반찬사오기의 도움정도 등의 設問을 통해 作成되었다.

<表 3-2> 役割遂行 關係

역할	거주형태	한 집	안·밖거리	동일부락	타부락	계	비 고
농 사 및 집 안 일	각 자	4[4.7] (0.8)	8[12.1] (1.7)	48[32.0] (10.1)	82[47.4] (17.3)	142(29.9)	$x^2 = 98.75$ df = 9
	시모가도움	29[33.7] (6.1)	23[34.9] (4.8)	33[22.0] (7.0)	6[3.5] (1.3)	91(19.2)	
	자부가도움	27[31.4] (5.7)	9[13.6] (1.9)	18[12.0] (3.8)	37[21.4] (7.8)	91(19.2)	p < .001
	형편따라	26[30.2] (5.5)	26[39.4] (5.5)	51[34.0] (10.7)	48[27.7] (10.0)	151(31.7)	
농 약 및 반찬사오기	각 자	11[12.8] (2.3)	21[31.9] (4.5)	105[70.0] (22.1)	128[74.0] (26.9)	265(55.8)	$x^2 = 152.00$ df = 9
	시모가도움	4[4.6] (0.9)	1[1.5] (0.2)	2[1.3] (0.4)	10[5.8] (2.1)	17(3.6)	
	자부가도움	51[59.3] (10.7)	22[33.3] (4.6)	17[11.3] (3.6)	13[7.5] (2.8)	103(21.7)	p < .001
	형편따라	20[23.3] (4.2)	22[33.3] (4.6)	26[17.4] (5.5)	22[12.7] (4.6)	90(18.9)	
김 장 및 장담그기	각 자	9[10.5] (1.9)	17[25.8] (3.6)	97[64.7] (20.4)	109[63.0] (23.0)	232(48.9)	$x^2 = 122.62$ df = 9
	시모가도움	40[46.5] (8.4)	23[34.8] (4.8)	18[12.0] (3.8)	43[24.9] (9.1)	124(26.1)	
	자부가도움	26[30.2] (5.5)	15[22.7] (3.2)	20[13.3] (4.2)	8[3.6] (1.6)	69(14.5)	p < .001
	형편따라	11[12.8] (2.3)	11[16.7] (2.3)	15[10.0] (3.2)	13[7.5] (2.7)	50(10.9)	
계	86[100.0] (18.1)	66[100.0] (13.9)	150[100.0] (31.6)	173[100.0] (36.4)	475(100.0)		

<표3-2>를 보면 모든 役割이 각자 따로하는 경우가 단연 높다. 이의 協助程度를 볼 때 농사 및 집안 일은 서로 형편 따라 돕는 일이 높으면서도 媼母와 子婦가 서로 돕는 것은 19.2%로써 같다. 그러나, 농약 및 반찬사오기는 媼母(3.6%)보다는 子婦(21.7%)가 돕는 경우가 훨씬 많고, 김장 및 장담그기에 있어서는 媼母(26.1%)가 子婦(14.5%)를 돕는 경우가 반대로 높다. 농약이나 반찬을 사오는 것은 보다 對外的인 즉, 市場에 나가야 되는 일이므로 젊은 子婦의 役割이 큰 反面 김장 및 장담그기는 일의 性格上 經驗이 더 많은 媼母의 도움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를 거주상황에 따라 살펴보면 한 집 또는 안·밖거리에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 그 傾向이 비슷하여 농사 및 집안 일, 김장 및 장담그기에 있어서는 媪母의 도움이 많고 농약 및 반찬 사오기는 子婦의 役割이 크다. 同一部落일 때도 각자하는 일이 높은데 도움정도에 있어서는 농사일 은 媪母, 김장 및 농약구입은 子婦가 돕고 있다. 먼부락일 때도 물론 각자하면서도 농사 및 집안 일, 농약 및 반찬사오기는 子婦가 높고 김장 및 장담그기는 시모가 돕는 경우가 높다. 농사는 주로 媪母의 居住地인 시골에서 짓게 되므로 그 役割은 媪母가 담당하면서도 도움정도는 子婦에게 높게 나타나 同一部落內일 때와 다소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3) 愛情關係

相互間的 愛情關係는 평상시의 대화, 언쟁, 일상시 왕래정도, 서로간의 생일을 살펴 보았다.

평상시 대화는 대체적으로 자주 나누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멀리 떨어진 부락일 경우는 만나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자주 하는 것 보다는 必要時에만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言爭은 거의 하지 않으면서도 가끔 언쟁이 23.2%나 되고 있다. 이것은 居住狀態에 따른 差異點이 드러나고 있는데 한 집 또는 안·밖거리일 경우 가끔 언쟁이 각각 33.7%, 40.9%인데 反해 同一部落·멀리 떨어진 부락일 경우는 17.3%, 16.2%로서 한 울타리 내에서 생활할 때 역시 言爭의 기회가 많다. 生活圈이 同一하다는 것은 結局 對話의 기회가 많아지게 되고, 따라서 葛藤 發生의 餘地도 많음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써 核家族를 理想으로 하는 本島의 家族도 예외일 수는 없는 것 같다.

일상시 往來程度는 同一部落內일 경우 수시방문이 지배적이나 멀리 떨어졌을 때는 명절이나 대사시에만 往來하는 경우가 제일 높아, 거리가 먼 만큼 接觸의 頻度도 낮아지고 있다.

<表 3-3> 愛情關係(內容別)

애정	거주형태	한 집	안·밖거리	동일부락	타부락	계	비고
대화	자주	60(69.8) (12.6)	35(53.0) (7.4)	91(60.7) (19.2)	59(34.1) (12.4)	245 (51.6)	$x^2 = 61.23$ df = 6 p < .001
	필요시	26(30.2) (5.5)	29(44.0) (6.1)	51(34.0) (10.7)	76(43.9) (16.0)	182 (38.3)	
	거의없음	—	2(3.0) (0.4)	8(5.3) (1.7)	38(22.0) (8.0)	48 (10.1)	
언쟁	자주	1(1.2) (0.2)	1(1.5) (0.2)	2(1.3) (0.4)	4(2.3) (0.9)	8 (1.7)	$x^2 = 25.18$ df = 6 p < .001
	가끔	29(33.7) (6.1)	27(40.9) (5.7)	26(17.3) (5.5)	28(16.2) (5.9)	110 (23.2)	
	거의안함	56(65.1) (11.8)	38(57.6) (8.0)	122(81.4) (25.7)	141(81.5) (29.6)	357 (75.1)	
계		86(100.0) (18.1)	66(100.0) (13.9)	150(100.0) (31.6)	173(100.0) (36.4)	475 (100.0)	
일상시 왕래	수시			112(74.7) (34.7)	23(13.3) (7.1)	135 (41.8)	$x^2 = 139.49$ df = 3 p < .001
	주 1 회			27(18.0) (8.4)	44(25.4) (13.6)	71 (22.0)	
	월 1 회			7(4.7) (2.2)	47(27.2) (14.5)	54 (16.7)	
	대사시			4(2.6) (1.2)	59(34.1) (18.3)	63 (19.5)	
계				150(100.0) (46.5)	173(100.0) (53.5)	323(100.0)	

이를 居住狀況에 關係없이 姑婦間別로 差異點을 보면 <表 3-4>에서 보여주는 바와같이 子婦는 수시 방문이 높은 分布이면서도 명절이나 대사시에만 방문하는 것도 27.5%나 되고 있다. 媿母側에서는 오히려 수시 방문이 높다.

<表 3-4> 愛情關係(姑婦間別)

애경	고부간	자 부		시 모		비 고
		Na	%	Na	%	
일상시 왕래	수시	83	43.9	52	38.8	$x^2 = 33.43$ df = 3 p < .001
	주 1회	28	14.8	43	32.1	
	월 1회	26	13.8	28	20.9	
	대사시	52	27.5	11	8.2	
	계	189	100.0	134	100.0	
생일	알고 있어서 표현	127	46.2	—	—	$x^2 = 126.26$ df = 2 p < .001
	알고 있으나 모른척	27	9.8	33	16.5	
	전혀 모른다	121	44.0	167	83.5	
	계	275	100.0	200	100.0	

생일에 있어서는 姑婦間的 差異點을 보고자 했다. 子婦가 媿母의 生辰을 알고 식사 대접이나 선물 등을 하는 일이 46.2%이며, 전혀 알지조차 못하는 경우도 44.0%나 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하나의 慣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 비단 媿母의 生辰뿐만 아니라 시골에서는 親庭母나 男便이라 하더라도 비슷한 形態로, 생일에 대한 觀念이 陸地部와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즉, 生活의 餘裕없이 지내오던 것이 오늘날에 와서도 그대로 이어지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媿母側에서 子婦의 生日을 알고 뜻을 表現하는 일은 더군다나 한 사례도 없으며, 알지조차 못하는 경우가 83.5%로서 대부분이고, 알고 있지만 모른척 한다는 경우도 16.5%이다.

3. 葛藤의 程度 및 原因

<表 4-1> <表 4-2>에서 보여주는 바와같이 12개의 問項에 대해 각각 느끼는 不滿의 程度를 表示하도록 한 結果 兩側이 느끼는 不滿의 程度나, 滿足度가 비슷하게 分布되어 있다. 그러나 「약간불만」 이상을 합쳐보면 媿母는 25.3%이고, 子婦는 22.5%로써 큰 差異는 아니지만 媿母側에서 느끼는 不滿이 약간 높다. 全體 姑婦가 느끼는 不滿強度의 平均점이 媿母 0.38, 子婦 0.35로서 「약간불만」이 1.0임을 감안할 때 이 수치는 葛藤이 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現象이 他地方과 어떤 差異點을 갖고 있는지는 疑問이다. 직접 비교가 무리이긴 하지

〈表 4-1〉 葛藤의 程度 및 原因(媼母)

원 인	불만의 정도					계	불만 강도	
	매우불만	비교적불만	약간불만	불만없다	그런일없다			
경제문제 제멋대로	7	22	24	50	97	200	0.45	
대사시 혼자 좌지우지	12	21	21	34	112	200	0.50	
시모가 일해해도 그냥 지나침	5	12	34	38	111	200	0.37	
게으르고 살림에 규모없다	9	12	36	32	111	200	0.44	
어린애 키우는 법	9	5	29	59	98	200	0.33	
경제적인 원조	3	2	34	42	119	200	0.27	
아들에 대한 태도	13	11	38	30	108	200	0.50	
친정식구와 더 가깝다	4	14	38	46	98	200	0.39	
생일때 무관심	4	4	32	47	113	200	0.26	
시집식구의 험담	7	10	29	28	126	200	0.35	
시부모 봉양	4	16	29	39	112	200	0.37	
성격차이	8	11	40	44	97	200	0.43	
	Na	85	140	384	489	1,302	2,400	평균
	%	3.5	5.8	16.0	20.4	54.3	100.0	0.38

* 불만강도는 매우불만 3점, 비교적불만 2점, 약간불만 1점을 주어 산출.

** 200名 媼母가 12개 不滿原因에 응답한 것이므로 총지적수는 200 × 12 = 2,400개가 됨.

〈表 4-2〉 葛藤의 程度 및 原因(子婦)

원 인	불만의 정도					계	불만 강도	
	매우불만	비교적불만	약간불만	불만없다	그런일없다			
경제문제 일일이 지시	6	26	31	27	185	275	0.37	
자식이 부담하는 대사시 간섭	7	20	56	38	154	275	0.43	
아무리 바빠해도 도와주지 않음	7	11	45	61	151	275	0.32	
내가 할일도 도맡아 해버림	6	18	36	47	168	275	0.33	
손자들을 버릇없이 해 놓는다	20	13	23	57	162	275	0.40	
경제적인 원조	7	16	50	94	108	275	0.37	
남편과 다정한 것을 질투한다	5	6	21	29	214	275	0.17	
친정식구의 방문을 싫어한다	10	19	43	50	153	275	0.40	
생일때 무관심	11	4	35	109	116	275	0.28	
친구나 이웃에 며느리 험담	19	22	42	39	153	275	0.52	
분가를 빨리 해주지 않았다	2	8	18	64	183	275	0.15	
성격차이	20	16	45	61	132	275	0.50	
	Na	120	179	445	676	1,880	3,300	평균
	%	3.6	5.4	13.5	20.5	57.0	100.0	0.35

만 서울의 子婦를 對象으로 한 것과, 媣母를 對象으로 調査한 것을 같이 比較해 보면 서울 媣母의 不滿強度는 0.43, 子婦는 0.98¹⁷⁾로서 서울에 비해 姑婦 모두 不滿強度가 아주 낮다. 따라서 葛藤보다는 理解와 和合의 精神이 더욱 강하다고 판단해도 좋을 것이다.

한편, 미약하나마 이러한 葛藤을 招來하는 不滿의 原因別로는 媣母의 경우 大事時 媣母를 무시하고 혼자서 좌지우지 하려는 것과, 당신의 아들에 대한 며느리의 태도를 가장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 서울의 媣母¹⁸⁾에 있어서도, 시부모 모시는 일이 소홀하다는 것과, 아들에게 버릇 없이 行動하는 것의 順位가 높게 나타나 共通點을 보여주고 있다. 같은 女性이면서도 아들에 대해서는 子婦가 버릇없이 함부로 行動한다고 느끼는 것은 同居與否에 關係없이 아들을 사이에 둔 女性 대 女性으로서의 묘한 心理的 葛藤으로서 相互 否定的 要素가 다분히 內在함을 엿볼 수 있다. 그 다음가는 불만으로는 經濟權과 관련된 것으로서 經濟問題를 제멋대로 하는 것과 게으르고 살림에 規模가 없다는 順으로 나타나고 있다. 反對로 不滿을 덜 느끼는 차례로서는 생일의 無關心, 經濟援助, 어린애 키우는 법의 順이다.

不滿의 強度가 낮은 要因들을 살펴보면, 生日時 子婦가 알고도 모른척 한다든가 아예 알지조차 못하는 경우가 반이상이 되는 데도 不滿強度는 가장 낮다. 이는 媣母側에서도 아예 기대를 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現象은 普遍的인 樣相인데서 不滿이 생기지 않는 것이라 여겨진다. 子婦가 經濟問題나 高價관리를 제멋대로 한다고 不滿을 느끼면서도 經濟的인 도움을 주지 않는 점에 대해서 不滿이 적은 것은 媣母에게 의논을 하지 않는다든가 또는 아들의 허락없이 멋대로 한다는 등의 不滿이 있는 것이지 經濟權을 媣母가 차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經濟的 도움이나 어린애 키우는 법에 있어 不滿이 적은 것도 分家에서 오는 현상이 아닌가 한다.

子婦의 立場에서는 며느리 부담을 하는 것에 대한 不滿이 가장 強하고 性格差異, 자식의 부담으로 치르는 대사시에도 간섭이 지나치다는 順이다. 韓國 農村家族에서 “시어머니와 同居하고 있는 며느리뿐 아니라 同居하지 않고 있는 며느리까지도 姑婦間的 갈등의 主된 原因은 姑婦間的 性格差異”¹⁹⁾라고 본 것도 同軌라 생각된다.

本島 子婦들의 不滿이 적은 차례로서는 分家를 빨리 해주지 않았다. 男便과 다정한 것을 질투해 싫어한다, 며느리 生日에 對한 無關心 順이다. 그러나, 서울의 子婦들은 “아들 生日은 찾

17) 柳嘉孝, “韓國都市 家族의 姑婦葛藤의 實態와 展望”, 서울大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76, p.35.

李敬愛, “姑婦葛藤에 關한 研究”, 淑明女大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0, p.42.

위의 두 論文의 調査結果를 本 研究에서 行한 方法으로 筆者가 불만강도를 산출한 것임.

18) 李敬愛, 上揭論文, p.43.

19) 朴富珍, 前揭論文, p.115.

아도 나의 生日에는 無關心하다”²⁰⁾는 不滿이 아주 強하여 尙반된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子婦 역시 自身の 生日을 媿母가 챙겨주리라는 期待가 아예 없기 때문에 不滿度도 낮은 것으로서 生活條件의 差異에서 비롯되는 점으로 보인다.

이러한 葛藤의 樣相을 居住狀況에 따라서 分析해 보면 <표4-3>에서 보여주듯이 媿母의 경우는 가까이서 生活할수록 不滿이 크고, 생활거리가 멀수록 약하다.

子婦는 반응을 달리하여 不滿強度가 안·밖거리, 한 집, 먼부락, 동일부락의 順으로 낮아지고 있다.

<表 4-3> 居住狀態別 葛藤의 程度(불만점수)

고부간		거주형태	한 집	안·밖거리	동일부락	타 부락
시	모		240 (0.55)	166(0.46)	253(0.37)	263(0.28)
자	부		234 (0.39)	231(0.53)	324(0.28)	378(0.33)

* () 안 수치는 불만강도임.

** $\chi^2 = 11.48$ df = 3 p < .01

한 집에서 生活하고 있는 경우는 대부분 同居家族으로서 그 理由가 거의 父母年老 및 勞動力 상실을 들고 있어, 媿母의 힘이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한 生活의 管理權 등이 子婦에게 보다 強하게 주어지게 되었을 것이며 상대적으로 약한 媿母의 不滿은 그만큼 커질 것이다.

안·밖거리의 경우에는 反對로 子婦의 不滿이 높은데 이 점 또한 같은 脈絡으로 理解된다. 이 形態 중에서 炊事共同은 28 家族, 分離는 38 家族으로서 炊事分離 家族이 많다는 것은 媿母의 勞動力이 아직은 상실되지 않았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면에서 아직 活動力이 있는 媿母의 權威가 알게 모르게 作用될 것이며 이로 인해 子婦의 不滿은 더욱 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判斷된다. 이러한 점은 살림이 독립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생각된다.

同一部落보다는 먼부락 子婦의 不滿이 더 큰 점도 媿母와는 反對現象인데 大事時 음식장만에 대한 主導權에 있어서 다른 居住形態에서는 子婦의 권한이 큰데 비해 먼부락의 경우에만 媿母의 主導權이 크게 나타나 있다. 또한 농사일이나 집안일의 도움 정도는 가까울수록 보통 媿母가 子婦를 도와주고 있으나 그 反對의 경우는 子婦가 돕는 비율이 높은데 이러한 與件들이 不滿을 높이는 要因으로 作用한다고 본다.

20) 柳嘉孝, 前揭論文, p.36 및 p.56.

〈表 5〉 姑婦間的 態度

태도		고부간		자부		시모	
노후생활	경제적 부양 및 동거	46	16.7	54	27.0		
	경제적 부양 · 분가	51	18.6	41	20.5		
	경제적 독립 · 동거	46	16.7	26	13.0		
	경제적 독립 및 분가	132	48.0	79	39.5		
동거원하는자녀 (노동력상실후)	반드시 장남	72	26.2	58	29.0		
	경제적 여유있는 아들	32	11.6	22	11.0		
	자식들의 형편에 따라	150	54.5	101	50.5		
	아들·딸 구별없이 마음에 맞는 자식	21	7.7	19	9.5		
분가	장남도 결혼직후 즉시	178	64.7	131	65.5		
	큰자부는 시집생활 익숙후 · 타 자부 결혼직후	60	21.8	33	16.5		
	장남은 동거 · 다른 자식은 분가	37	13.5	36	18.0		
시모의 며느리 살림 관여	전적으로 관여해야	5	1.8	6	3.0		
	관여할 일에만 어느정도	196	70.9	141	70.5		
	전혀 관여치 말아야	75	27.3	53	26.5		
고부간에원단히 지내려면	따로살아 부딪치는 일이 적어야	84	30.5	53	26.5		
	시모가 며느리를 덮어줘야	47	17.1	84	42.0		
	며느리가 참으며 살아야	107	38.9	32	16.0		
	동거하더라도 가사를 분리해야	37	13.5	31	15.5		
계		275	100.0	200	100.0		

4. 姑婦間的 態度

1) 子女에 對한 同居 및 扶養意識

老後의 生活에 있어 子女에게 기대하는 同居 및 扶養意識을 보면 媳母側에서는 經濟的 扶養을 받으면서 자식 가족과 同居하고 싶다는 즉, 直系家族의 形態를 원하는 경우는 27.0%이다. 經濟的으로 獨立하면서 同居를 希望하는 것은 13.0%, 經濟的 扶養은 받더라도 別居를 원하는 경우는 20.5%이나 完全한 分家를 원하는 것은 39.5%로서 가장 높은 율을 보인다. 이를 서울²¹⁾과 比較해 본다면 많은 差異點을 나타내고 있다. 〈表 6〉에 의하면 本島의 媳母는 老後에 40.0%가 同居를 희망하나, 서울의 媳母는 69.2%이다. 또한 47.5%가 老後에 經濟的 扶養을 원하나, 서울의 媳母는 54.0%

〈表 6〉 同居 · 扶養意識 地域比較〈媳母〉

의식	지역별	
	제주	서울
경제부양및동거	54(27.0)	68(39.5)
경제부양 · 분가	41(20.5)	25(14.5)
경제독립 · 동거	26(13.0)	51(29.7)
경제독립및분가	79(39.5)	28(16.3)
계	200(100.0)	172(100.0)

21) 李敦愛, 前揭論文, pp.38 - 39.

이다. 즉, 直系家族의 形態를 바라는 것은 서울이 보다 강한 反面 核家族을 원함에 있어서는 本島의 媳母가 훨씬 높다.

子婦側에서는 本人들이 老後에 자식가족과의 희망관계를 보면 同居를 원하는 경우는 33.4%이고 別居는 66.6%이다. 經濟的 扶養을 원함이 35.3%이고, 獨立이 64.7%이다. 즉, 장차 經濟的 扶養과 同居希望은 16.7% 뿐이며, 經濟的 獨立 및 別居는 48.0%나 되어 媳母側보다 더 自身들이 老後에 媳母로서 자식에게 同居나 經濟的 扶養에 對한 기대감이 적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은 現在 子婦들이 媳母에 對해 經濟的 扶養이나 同居에 있어 느끼는 부담감에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아직은 젊기 때문에 장차 노동력 상실후의 生活을 보다 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만 現在의 媳母들은 自身의 年老에 따라 疏外感 내지 勞動力 상실을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同居나 扶養을 더욱 원하는 것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2) 同居를 希望하는 子女

現在는 別居를 원하더라도 氣力이 떨어져 同居를 해야만 하는 狀況에 처했을 때 어느 子女와 同居를 希望하는지를 물었다. 그 結果 반드시 長男家族을 답한 경우가 子婦(26.2%)보다는 媳母(29.0%)가 약간 높으나 全體의인 흐름은 거의 비슷한 樣相을 띠고 있다. 즉, 자식들의 의사에 따르겠다는 경우가 姑婦間에 모두 높아 반드시 長男이러야 된다고 보다는 자식들의 형편에 따르려는 傾向을 띠고 있다. 高貞子의 研究²²⁾에서는 長男과 同居를 希望함이 31.92%, 夫婦만의 生活 24.02%, 其他 家族과의 同居 21.36%로 長男을 원하는 率이 높음을 보고했다. 또한, 서울²³⁾의 媳母들은 반드시 큰아들 내외와 同居하겠다는 경우가 52.9%나 되어 本島의 樣相과는 상당히 다르다.

3) 分家意識

子息의 結婚後 分家問題도 비슷한 傾向이다. 長男이라도 結婚直後 즉시 分家시키겠다는 경우가 媳母(65.5%)나 子婦(64.7%)가 모두 높아 島民들의 分家主義를 立證해 주고 있다.

큰 자부는 어느 정도 시집생활에 익숙케 한 후 分家시키고 다른 子息은 結婚後 곧 分家시키겠다는 것은 媳母(16.5%)보다 子婦側(21.8%)이 다소 높으나, 長男은 同居하고 다른 자식은 즉시 分家시키겠다는 것은 子婦(13.5%) 보다는 媳母(18.0%)가 우세하다. 한편, 全國을 對象으로 한 調査에서 “長男일 경우 分家與否는 익숙한 후 分家시키겠다고 44.5%로 가장 높은 率을 보이며 現在로는 즉시 分家시키지 않겠다고 率이 70%以上”²⁴⁾임을 보여주는 것은 여러 면에서 陸

22) 高貞子, 前揭論文, p.28.

23) 李敬愛, 前揭論文, pp.40 - 41.

24) 高貞子, 前揭論文, p.29.

地部 家族과는 큰 차이가 있다.

4) 媠母의 며느리 살림에 대한 관여

이 問題도 姑婦間에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전혀 관여치 말아야 된다는 것 보다는 관여해야 할 일에만 어느 정도 해야 된다가 媠母나 子婦 모두 아주 높다. 그러나 전적으로 관여해야 한다는 경우는 양측 모두 찬성율이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는 “15%의 시모, 11%의 자부가 자부가정을 다스리고 관여함이 당연하다고 보며 85%의 시모, 89%의 자부는 이러한 思考方式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²⁵⁾ 고 하여 本考와는 差異를 보인다. 즉, 子婦 家庭에 全的으로 관여해야 한다는 점에 관심이 적어 서로 獨立된 家庭으로 인정하려는 意識이 서울보다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5) 姑婦間 葛藤의 解決意識

姑婦間에 원만히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점에 있어서도 兩側이 비슷한 傾向을 띠고 있다.

따로 살아 부딪치는 일이 적어야 한다(媠母: 26.5%, 子婦: 30.5%)는 경우도 꽤 있으며 居住單位가 같더라도 家事를 分離하면 된다는 경우도 子婦 13.5%, 媠母 15.5%나 되었다. 結局 分家나, 함께 살더라도 家事의 獨立을 원하는 側은 獨立生活의 意志를 表現한 것이므로 이들을 합쳐본다면 媠母 42.0%, 子婦는 44.0%가 되어 兩側이 別個의 生活을 원하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또한 媠母側에서는 며느리의 흉허물을 덮어주면서 살아야 된다는 경우가 42.0%, 子婦側에서는 며느리가 참으며 살아야 된다는 경우가 38.9%이다.

子婦는 子息으로서의 도덕관념이 작용하여 며느리된 道理로서 참으면서 살아야 된다고 意識하고 있는 反面, 媠母側에서는 權威를 主張하기 보다는 오히려 감싸줘야 된다는 반응이 강한 것이다. 상대방에 대한 叱責보다는 理解와 包容力으로 對處하고 있다.

V. 結 論

以上 살펴본 分家狀態, 相互生活 關係, 葛藤의 程度 및 原因, 姑婦間의 態度 등을 土臺로 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1. 分家狀態를 볼 때, 대부분이 核家族型을 取하고 있다. 同居家族에 있어서도 同居의 時期나 그 理由 등을 考慮한다면 陸地의 傳統的 直系家族과는 內在하는 根本 精神이 다르므로 本島

25) 이정우, “大都市 中流家庭의 家族關係”, 「대한가정학회지」11-4, 1973, p.114.

의 家族은 現實의으로나 理想의으로 夫婦家族(核家族)임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分家, 즉 獨立生活에의 意志는, 姑婦關係를 傳統家族과 같은 痼疾의인 關係로까지 惹起시키지 않는 要因으로 作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姑婦가 經濟單位로나 居住單位로 生活을 分離하면서도 한 울타리내의 안·밖거리에서 生活해 나가는 狀況은 큰 特徵 중의 하나로서 서로의 空間을 인정하면서 老後에도 子息家族과 情緒紐帶를 계속해 나갈 수 있는 友愛家族(Companionate family)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울타리 넘어 따로 生活하더라도 自身의 生活은 스스로 解決하려는 意識이 強하여 子息에 對한 기대치가 약하므로 媳母가 느끼는 疏外感이 強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特性들은 앞으로 產業社會가 志向해 나가야될 民主 家族의 理想型을 찾는데 寄與하리라 여겨진다.

3. 姑婦間의 相互 生活 關係를 볼 때 家事運營權이나 役割遂行이 自身들의 生活 領域에 따라 각각 있어 協助關係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愛情關係에 있어서도 肯定的인 면을 나타내어 밝은 展望을 보여준다.

4. 姑婦間의 葛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不滿強度의 수치가 극히 낮아 陸地 傳統的인 家族에 비하면 葛藤이 심각하게 存在하지는 않고 있다. 居住狀態에 따라 差異가 있어 同一部落 또는 他部落에서 生活하는 것 보다는 한 울타리내에서가 不滿의 強度가 커서 分家狀態가 姑婦關係에 미치는 影響力을 立證해 주고 있다.

5. 姑婦間의 態度에 있어 철저한 分家主義, 經濟的 및 精神的인 獨立意志 등이 나타나 強한 本島 女性의 意識을 엿볼 수 있게 한다.

參 考 文 獻

- 高貞子, “韓國家庭의 姑婦關係에 關한 研究”, 東亞大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74.
- 金敬姬, “未婚女性의 시어머니觀”, 서울大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77.
- 金良順, “濟州道의 家族生活 實態 一部에 關한 研究”, 「대한가정학회지」15-1, 1977.3.
- 金榮敦, 「濟州道民謠研究上」, 一潮閣, 1965.
- 金容旭·李琦淑, 「韓國의 姑婦關係」, 青林閣, 1977.
- 金兌玄, “濟州島의 老人生活 研究”, 「대한가정학회지」18-1, 1980.3.
- 朴富珍, “韓國農村 家族의 役割構造”, 「人類學論集」1, 1975.
 , “韓國農村 家族의 姑婦關係”, 「韓國文化人類學」13, 1981.
- 延珍洙外 8人, 「家庭管理學 研究方法論」, 大學教材出版社, 1983.
- 柳嘉孝, “韓國都市 家族의 姑婦葛藤의 實態와 展望”, 서울大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76.
- 李敬愛, “姑婦葛藤에 關한 研究”, 淑明女大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0.
- 李光奎, “社會”,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濟州道篇)」, 文化財管理局, 1974.
 , “父系家族에서의 姑婦關係”, 「一類學論集」1, 1975.
 , 「韓國家族의 心理問題」, 一志社, 1981.
- 李琦淑, “韓國家庭에 있어 姑婦間의 葛藤에 關한 分析”, 부산대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75.
 , “姑婦關係에 關한 研究”, 「대한가정학회지」, 15-2, 1977.6.
- 李順炯, “年齡 및 地域變數에 따른 姑婦間 役割遂行의 變化”, 「대한가정학회지」21-2, 1983.6.
- 李貞淑, “主婦와 媳母간의 關係考察”, 「대한가정학회지」7, 1969.11.
- 이정우, “大都市 中流家庭의 家族關係”, 「대한가정학회지」11-1, 1973.7.
 , “女教師의 媳父母觀”, 「대한가정학회지」11-4, 1973.12.
 , “專門職 女性의 家族關係觀”, 「亞細亞女性研究」13, 1974.12.
- 李泰賢, “韓國既婚女性의 姑婦間의 關係”, 又棠 趙圻烘先生 華甲記念 「家庭學論文集」, 1968.
- 李効再, 「都市人의 親族關係」, 韓國研究叢書 27, 韓國研究院, 1971.
- 林貞子, “家庭生活과 媳母와의 關係考察”, 「圓光大學論文集」5, 1970.
- 佐藤信行, “濟州島의 家族”, 「韓國農村의 家族と 祭儀」, 東京大學出版會, 1973.
- 秦聖麒, “父子兩家의 生活流通: 濟州島 歲時風俗을 中心으로”, 「韓國文化人類學」9, 1977.
- 泉靖一, 「濟州島」, 東京大學出版會, 1966.

- 崔在錫, 「韓國家族 研究」, 民衆書館, 1966.
- , “韓國農村 家族의 役割構造”, 「震檀學報」32, 1969.
- , 「濟州島의 親族組織」, 一志社, 1979.
- , 「現代家族研究」, 一志社, 1982.
- 韓昌榮, 「濟州道 老人論攷」, 韓一文化社, 1978.
- 黃德旬, “濟州道の 家計管理 實態에 關한 調查研究”, 「대한가정 학회지」19-2, 1981·6.
- 黃春仙, “韓國家庭에 있어서 姑婦間의 不和要因 分析 및 그 解決方案”, 「大邱教育大學論文集」15, 1979.
- 玄容駿, “제주도 해촌 생활의 조사연구(I)”, 제주대 논문집 2, 1970.
- , “社會”, 「濟州道 文化財 및 遺蹟綜合調查報告書」, 濟州道, 1973.
- Judson T. Land is & Mary G. Landis, *Building a Successful Marriage*, Prentice-Hall, Inc., 6ed, 1973.
- Robert R. Bell, *Marriage and Family Interaction*. The Dorsey Press, 4ed, 1975.

SUMMARY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the Mother-in-law and the Daughter-in-law in the Families of Jeju Island.

by Kim Hye-sook

In this paper, the writer attempt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other-in-law and the daughter-in-law in the families of Jeju Island. For this purpose, 200 mothers-in-law and 275 daughters-in-law were selected at random.

This survey was conducted from March 26, 1983 till May 8, 1983 from 475 families who were living in Jeju City, Seogwipo City, 5 villages in Nam-Jeju-goon, and 6 villages in Buk-Jeju-goon.

The data were drawn through interview, and analyzed by percentage and X (Chisquare).

The major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Considering the distribution of collateral families, most of them in Jeju are realistic or idealistic conjugal, what is called, nuclear families on contrary to the traditional stem families of the main land. This kind of collateral family systems contributes to the more favorable conditions in relationship between the mother-in-law and the daughter-in-law than in that of traditional family systems.
2. In spite of an independent life for each other in economy, in the same dwelling area, both mothers-in-law and daughters-in-law acknowledge their residential space. Though parents grow older, the parents family and their sons family lead their emotional lives, and show the possibility of companionate family. Even though they live in the different residential areas, they both have a strong desire to solve their problems for themselves without depending on for each other. So most mothers-in-law rarely feel isolated to their daughters-in-law. This kind of characteristics contribute the future industrial society to leading to the idealistic, democratic family form.
3. When we consid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other-in-law and the daughter-in-law, in each life, home managerial priority and its execution lie in reciprocal co-operative relationship, so their affectionate relationship looks favorable.
4. There is a little conflict between the mother-in-law and the daughter-in-law, but it is so slim that it seems not to have any influence on their relationship, compared with that of the traditional family in the main land. According to the residential statistics, living together in the same village rather than living independently in different villages, have more influence on the relationship of the mother-in-law and the daughter-in-law.
5. When we consider the attitude of the mother-in-law and the daughter-in-law, in the complete separate family form, the women in Jeju have more strong economic and spiritual independent will.